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 안 번호 4719

제출연월일: 2024. 10. 16.

제 출 자:정 부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환경적·외부적 요인 등을 고려하지 아니한 획일적인 지정취소 등의 사유를 개선함으로써 교육기관의 경영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활동 지원사교육기관이 교육과정을 1년 이상 운영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유로 해당 교육기관의 지정을 취소하거나 업무정지를 명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교육과정을 운영하지 아니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를 고려하도록 하려는 것임.

법률 제 호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제2항제3호 중 "교육과정"을 "정당한 사유 없이 교육과정"으로 한 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활동지원사교육기관의 지정취소 등에 관한 적용례) 제28조제2항 제3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이 법 시행 이후 행정처분을 하는 경우에도 적용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8조(활동지원사교육기관의 지	제28조(활동지원사교육기관의 지		
정 등) ① (생 략)	정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시・도지사는 교육기관이 다	②		
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			
는 경우에 1개월의 범위에서 업			
무의 정지를 명하거나 그 지정			
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l		
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3. <u>교육과정</u> 을 1년 이상 운영하	3. <u>정당한 사유 없이 교육과정</u> -		
지 아니하는 경우			
4. (생략)	4. (현행과 같음)		
③・④ (생 략)	③・④ (현행과 같음)		